

지방자치제, 농민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 강춘성)는 지난 1월 29일 전국농업기술
자협회 진흥관에서 「지방자치제, 농민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이란 주제
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국대 김병태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초발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주> ……………◇

지자체와 농민 및 농민단체의 책임과 자세

김 안 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며 지
방분권화의 확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
면 자치구역 및 자치주민,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처리
권과 같은 자치권한이 있어야
하겠다.

올해부터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지방자치기관 구성
의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
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기반
을 구축하며, 국민적 민주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선거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국가와 지방의 기능배분 및 법령과 조례, 판례와 같은 완벽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민주성과 자치성, 능률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인력과 재원을 갖춘 지방정부, 민주의식을 가진 주민과 자립경제등 자치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성과 자치성, 경제력으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근거로 한 효율적인 운영이 뒤따라야 하며 ▲건전한 지역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1989년에 농업인구는 총6,786명으로 전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21.4%, 총생산은 GNP의 10.3%를 차지하므로 우리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농민은 국민경제의 뿌리인 농업을 지켜왔고, 국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식량을 공급하며,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풀뿌리라 할 수 있다. 과거 지방의회 의원을 보면 1952년 1회 지방의회때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시·읍·면의 경우 87.5%, 도 51%이고, 1956년 2회때는 시·읍·면 87.6%, 서울·도 49%, 1960년 3회때 시·읍·면 85.6%, 서울·도는 46.8%로 지방의회가 농민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우리농민이 선출해야 할 지방의원 대표상은 ▲광범위한 지식과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중요함을 인식한 진실된 이해력을 가진 사람 ▲일반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며, 높은 덕망과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 ▲조화로운 주민적 관리능력, 문제규명의 과학적 통찰능력, 처방·제시의 합리적 대응능력, 정책구현의 과감한 추진능력을 갖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주어야 하겠다.

농민 및 농민단체의 책임과 자세로는 첫째, 자치 의식, 자치 기술, 자립경제와 같은 자치역량의 함양.

둘째, 선거과정의 공명성,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지방 대표의 선출.

셋째, 농민의 단결과 농민단체의 지원에 의한 농민대표의 선출.

넷째, 정치위주가 아닌 생활 위주의, 국가위주가 아닌 지방 위주로 주민위주의 자치행정.

다섯째, 농업발전의 전기화, 농민의 중추역할 제고, 주민의 안착기반 강화로 농업 및 농민의 지위향상에 힘써야 하겠다.

지방자치와 농민단체의 대응방안

정 세 욱

(명지대학교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사무를 그 주민들의 의사와 소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를 뽑아

그 대표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

이 문제를 직접 토의·결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하게 대변하고 지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

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어떠한 인물이나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패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느냐, 독소가 되느냐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태껏 치뤄온 선거는 극도의 타락선거로, 이렇게 뽑힌 의원이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했는지는 의문스럽다.

현재 진행중인 UR농산물협상에서 보여준 정치인의 행동은 일관된 정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다. UR협상이 개시된지 4년이 넘도록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다가 농민과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기 시작하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세운 대책도 미국의 압력에 다시 수정하고

지금은 쌀과 쇠고기만 가격지 지정책을 통해 현 수준의 자급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방의 여파로 인한 피해는 농민이 받고 정치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유권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위해 농민단체가 대응해야 할 점을 지방선거와 농민의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방선거

첫째, 농민단체는 지나온 선거경험을 교훈삼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돈안쓰는 선거로 치루어 지도록 소속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이번 선거마저 타락선거가 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국민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농민단체는 직업정치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

지 말고 「농민을 위한 농민의 대표」를 농민중에서 선출하도록 농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2. 농민의 권익보호

첫째, 현재 농촌은 대외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되고 대내적으로 노동력 감소, 생산의욕저하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농민단체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농민의 마음속에 농민단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도록 폭넓은 사업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둘째,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던 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 농민단체들은 지방정부를 통한 농민이익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농업의 활성화

최 양 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 농업발전과 지자체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의 형태가 자급적, 반자급적 생계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바뀌게 되고 상업농업의 발전은 농업생산구조 및 작목조직,

작부체계에 변화를 촉진시키며, 농업생산조직에 있어서 지역간의 이질성을 증대시켜 왔다.

또한,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과 도시화 진행의 파급효과로 생산요소(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등)의 가격차이로 생산물의 지역적 상대가격의 차이를 나타내어 시장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는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출하시기조정, 품질고급화, 색깔, 맛등에 의한 상품의 차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농업생산은 자연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갖는 자연환경의 특성, 시간, 수송비용등 사회·경제적 입지상의 특성을 감안하는 노력이 시장경쟁에 반영되고 이는 농업발전의 차등화, 즉 농업발전의 지역성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지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인 대응체제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농정운용으로 농민들에게 현실감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중심의 농정운동」과 지역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실제적인 농업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농정운동」은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 왔고, 이러한 갈등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제를 요청하게 되었다.

2. 지자체와 지역농업의 활성화

지방자치제가 농업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지역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농업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지역농업발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적·행정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속에 움직여 온 현장사무소의 역할이었다.

한국의 경제사회가 공업화·도시화 되었다고는 하나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의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농업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왜곡된 개발의 우선순위를 시정하고 투자배분의 기준을 조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업의 활성화가 결국 지역농산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이루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수평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도지회,

군지부가 아닌 단위 농협을 기초로 한 자율적인 군농협, 도농협의 설립과 도농촌진흥원, 군농촌지도소 및 각종의 시험장이나 연구소등이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나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겠다.

3. 맺음글

지자체의 실시는 지역농업시대에 있어서 구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농업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지역농업발전의 주체를 확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농업관련기관, 단체들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